

해사법규

1. 다음 중 선박 항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내수에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선박은 공해 상에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대한민국 선박은 외국의 영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않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총톤수 20톤 어선
 - ② 예인선에 의해 끌려가는 부선
 - ③ 압항부선
 - ④ 예인선
3.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면제된다.
 - ②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면제된다.

4. 다음 중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할 때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따른 무해통항(無害通航)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해액체물질의 운송
 - ② 조사 또는 측량
 - ③ 잠수항행
 - ④ 어로
5.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 ②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 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선적·정박지·도선·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 ④ 항행정보에 대한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실시
6.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사용하여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7.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도선의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검사 시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로 한다.
 - ② 관할 관청은 유선에 대하여 중간기착지에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기착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유·도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항만수역 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다.
 - ④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유·도선은 야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8.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어선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낙시어선의 승선정원은 그 낙시어선에 설치된 구명설비의 수용인원과 낙시승객이 이용하는 공간의 면적에 따라 지정한다.
 - ② 낙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낙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낙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④ 낙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 낙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수상스키	㉡ 워터슬레이드	㉢ 고무보트
㉣ 스쿠터	㉤ 에어보트	㉥ 웨이크보드
㉦ 파라세일	㉧ 수상오토바이	㉨ 카이트보드
㉩ 세일링요트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0.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검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용물건이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경우 그 선박용물건은 최초에 실시하는 선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②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 등은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육상의 공장에서 제조·정비 과정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면 선박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 지정사업장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정비를 위한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 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선박검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강선으로서 선령 10년 이상의 여객선 및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은 정기검사 시마다 선저 검사 및 선체두께 측정을 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 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안전진단기준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 통제를 명할 수 있다.
 - ④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합의하여 1주간 2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휴식 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13. 다음 <보기>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 기 >

㉠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활동 중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16. 다음 <보기>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해양경찰서에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 ㉡ 연안사고는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등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포함한다.
 - ㉢ 연안사고예방협회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중앙연안사고예방협회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 중앙연안사고예방협회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이며,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7.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
- ③ 도선의 적재중량 산정기준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 ④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18. 다음 <보기>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출입항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보 기 >

 - ㉠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 ㉡ 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승선원 명부, 조업 지역, 평균어획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출입항신고서의 제출을 갈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 ㉢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 하는 어선은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 어선출입항 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 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외에는 어선출입항신고서 제출을 갈음하여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19. 상선 2급 항해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화물선 ‘해양호’ 선장 김해경은 2024년 10월 25일에 발생한 ‘해양호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목포지방법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025년 10월 10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았다.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이 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해경은 지방심판원에서 결정받은 사항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 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김해경은 2025년 10월 24일 이전에 중앙심판원에 서면으로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절차에 따라 재결한다.

③ 김해경의 제2심 청구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기각 결정 또는 각하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또는 2025년 10월 24일 이전에 담당조사관 및 해양 사고관련자 전원이 제2심 청구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김해경의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된다.

④ 김해경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지방심판원으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다음 <보기>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의 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 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는다.
 -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 하여야 한다.
 -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 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 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